

일본영역참고도(1951년10월22일 발표) 해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편

2014.8.26.

최근 발표되어 화제가 되어 있는 1951년 8월 일본수로부가 작성한 ‘일본영역참고도’가 같은 해 10월22일 일본국회에서 배포되었을 때의 국회의회의록이 존재한다.

이때의 회의명은 ‘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조약 특별위원회’였다. 이 회의록에 나오는 독도관련 부분이 아래 회의록의 빨간 줄을 그은 부분이다. 이 부분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야마모토 : (중략) 참고자료로 받은 ‘일본영역참고도’를 보면 (중략) 일본 영역을 나타내는 선이 다케시마(독도)의 바로 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후략)

구사바정부위원 : 현재 점령 하의 행정구역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제외되어 있지만 이번 평화조약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으로 들어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 영토임이 분명히 확인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니시무라정부위원 : (중략) 그것은 맥아더 라인이고 영토의 경계가 아닙니다. (후략)

구사바정부위원 :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선조업허가구역입니다. (후략)

電その他の報道がなされておりますが、日本人自体といたしましては、また政府自体といたしましては、今後この條約が効力を発生して、新しい日本の建設というものに着手をしながら、しかも將來未開地に日本民族が最も正しい信念を持つて、世界平和の協力のために活動するという状態に進んで参りますと、多くの國々が歓迎して、来る状態になつて来るのではないかと、思ひます。従ひまして今だから、從來の觀念から申します、いわゆる移民という言葉によつて表現されますような立場をとることは、よほど慎重を要する点ではないかと存じます。

○山本(利)委員 一條條約といふものは、最後に條文となつて現われるときにはまことに簡單なもの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の條約案をつくるにあつてのいろいろの根拠をなす折衝なりその他の点については、実に匪大なものであると考へておりましたので、私はさうな、今後日本が生きて行く上の根本問題と考へる人口問題、あるいはその一翼としての移民問題等について、詳しく御調査があり、さらに計画があつて、いゝ今日までにも適合國の了解を求められておるべきであると考へたから、さうな質問をいたしたのであります。この点については、今後日本国民の重大な問題でありますから、逐次立案されて発表せられるように希望いたします。この問題は終ります。

さらに第三條に關して、ごく具體的な問題であります。今回われが参考資料としていただきました「日本領城参考圖」を拜見いたしますと、ちやうど日本海を通つておりますこの

日本の領域を表わします線が、竹島の真上を通つておるのであります。露陵島は朝鮮にあるのは屬するものとして、竹島は元來島根縣の管轄下にありまして、重大なる漁業をなしておたのであります。この竹島が、この地圖で見ますと、われわれの領土なのか、あるいは露陵島に付屬して朝鮮等へ移されるものか。これらの点について、島根縣民はもちろんこれは日本の領土となつたと解釈しておるのであります。この際につきり御説明を願ひたいと思ひます。

○農林省委員 現在の占領下の行政區画には竹島は除かれておらずして、竹島は日本に入つて来ることをはつきり確認されたものと存じます。

○山本(利)委員 ただいまの答へを聞いて安心いたしました。さらにこゝう重要な委員会に配付されます地圖で、明瞭を欠いておると考へる点を申し上げたいのであります。今日まで再三問題となりました露陵島等が、やはりこの地圖では領域外になつておるのであります。千島であれ、あるいは齒舞、色丹等は、當然地圖に表わす場合には、わが領土として書き表わしておくことが、今後あらゆる場合に有利なのであつて、それをわが國の手で作成した地圖においてこれを省かれてお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まことに不注意千万であると考へるのであります。いかがなものでありますか。

○西村(熊)政府委員 御注意申し上げます。それはマツカーサー・ラインであります。領土の境界ではございませ

せん。御質問は全部お取消しを願ひたいと思ひます。私どもの答へも速記から取除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ひます。そういう疑念を平和委員会に起したということそれ自身、私はおもしろくないと思ひますので、お願いいたします次第でございます。

○山本(利)委員 ただいまの西村條約局長のお話を聞いて、私はまことに心外なのであります。この地圖を見る者、あるいはこれを受取つた者、これがマツカーサー・ラインであらうと、こゝうようなことも一応は承知するのでありますけれども、マツカーサー・ラインを示すものといふことが何ら明示してないのであります。日本領城参考圖として配付されたものであります。ただいまの点についての御非難はお取消しを願ひたいと思ひます。

○農林省委員 これはごらんの通り漁船操業許可區域でございます。多分黒い線で引いておる点を山本委員はおつしやつておられると思ひますが、ここにありますように、漁船操業許可區域としてこの点線を引いておるので、全体といたしましては千島列島として示しておるだけであります。御承知おきを願ひます。

□それが誤解を生ずるのだ、資料を訂正せよと呼ぶ者あり

○西村(熊)政府委員 資料の誤りはありません。あれば訂正いたします。

○田中委員 山本君、發言を御継続願ひます。

○山本(利)委員 それでは質問を進めます。さらに、これも山田委員及び松本委員等から再三言及がありました。今同配付を受けましたこの條約案の英文と訳文とに誤謬があるという問

つ注承他にフとれ出た府いとこのので議フの者○いかばはきるン障題し部にどうさ題

평화조약 및 미일안전보장보약 특별위원회 회의록(1951년10월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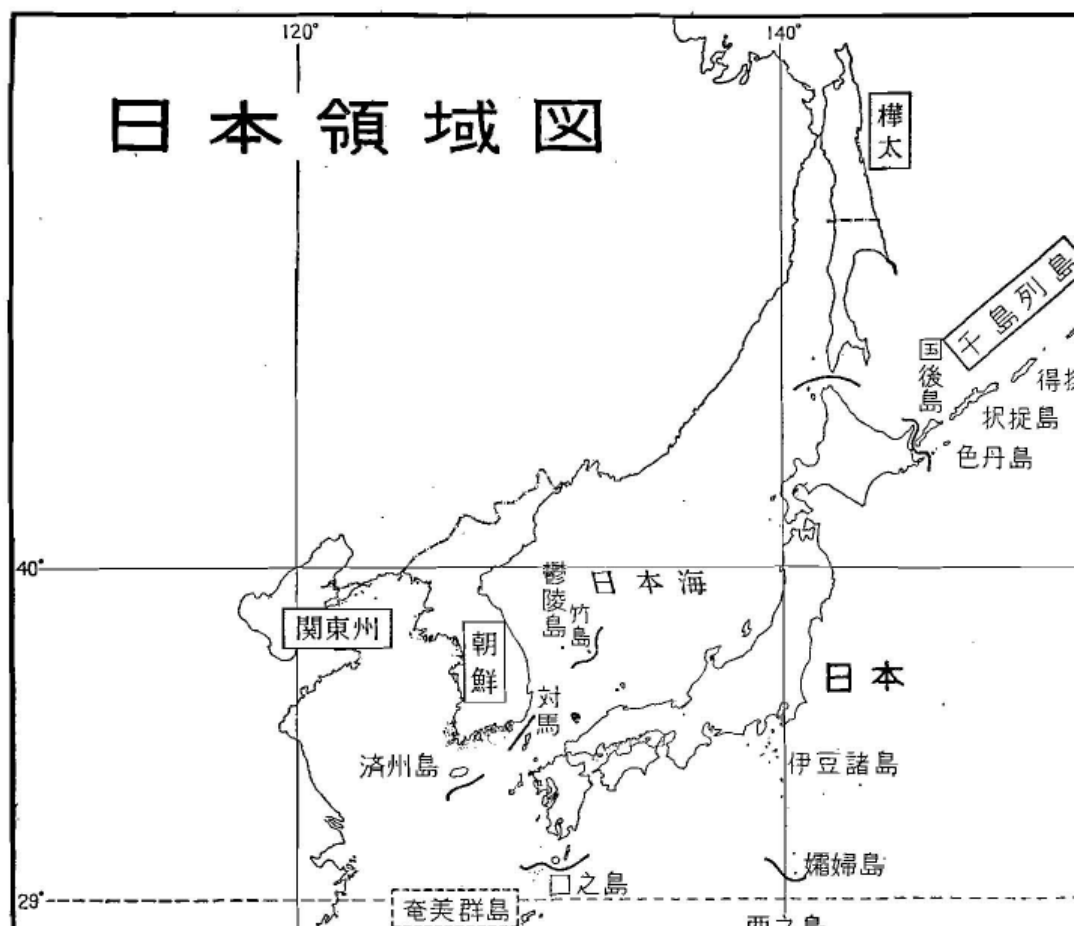


일본영역참고도

결국 일본영역참고도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은 1951년10월22일 시점에서는 1946년에 정해진 맥아더-라인이 남아 있었고 맥아더-라인은 독도를 일본의 행정 구역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배포된 '일본영역참고도'는 독도를 한국영토인 양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맥아더-라인이 나타내는 한국측 영역은 '연합국의 일본영토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다'라고 연합국지령문서인 SCAPIN677호에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일본 측 입장이다.

그런데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된 후에 발간된 마이니치신문사의 '대일평화조약'이라는 제목의 특별책자에 '일본영역도'가 실려 있다.



일본영역도

이 '일본영역도'를 보면 다케시마(독도)는 한국영토로 명백히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대일평화조약' 특별책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한

국영토에 관해서는 SCAPIN677호의 규정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이 평화조약 발효 후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기재한 것은 연합국이 독도에 관한 SCAPIN677호의 입장을 대일평화조약에서도 견지했다고 해석했기 때문일 것이다.

평화조약 제2조는 '일본에서 분리될 영토'를 열거하고 있으나 독도명칭은 제외되었다. 일본은 독도나 다케시마 명칭이 '일본에서 분리될 영토'에서 제외되었으니 독도는 일본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하나 한국에 속하는 수많은 작은 도서들도 '일본에서 분리된 영토'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모두 한국영토로 인정되었다.

독도를 한때 일본 땅으로 기재한 '러스크 서한'은 미국무성만의 견해이며, 다른 연합국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 1954년에는 미국무성이 비밀문서를 통해 당시의 러스크의 견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라고 하면서 '러스크 서한'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바 있다.

평화조약의 조문으로부터 독도를 제외한 1951년 6월의 영미 합동 초안에서는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들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주장했기 때문에 독도의 명칭이 삭제된 것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한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일본이 평화조약을 빨리 받아들여서 독립해 미국진영이 되어 줄 것을 목적으로 한 조치로 독도명칭이 삭제되었으나 이름이 없더라도 독도는 울릉도의 딸린 섬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이후 그 해 10월 한국의 미국대사관은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사실들은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독선적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호사카유지)